

제 31 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

주식회사 다우기술

제 1 호 의안 : 제 31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◆ 제안내용 ◆

상법 제 44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31 기 대차대조표(재무상태표), 손익계산서(포괄손익계산서), 자본변동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, 현금흐름표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.

1. 연결재무제표

(1) 연결 재무상태표

제 31 기 2016 년 12 월 31 일 현재
제 30 기 2015 년 12 월 31 일 현재

(주)다우기술과 그 종속기업

(단위 : 백만원)

| 계정과목 | 제31(당)기말 | 제30(전)기말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I. 자산 | | |
| (1) 유동자산 | 8,159,320 | 5,922,940 |
| 1. 현금및현금성자산 | 156,148 | 186,201 |
| 2. 예치금 | 249,784 | 202,003 |
| 3. 매출채권및기타채권 | 2,419,303 | 1,889,800 |
| 4. 단기대여금 | 103 | 3,138 |
| 5. 단기금융상품 | 85,414 | 23,759 |
| 6.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| 3,041,198 | 2,377,741 |
| 7. 파생상품금융자산 | 11,529 | 5,114 |
| 8. 단기매매금융자산 | 2,122,711 | 1,176,998 |
| 9. 기타유동자산 | 71,573 | 47,091 |
| 10. 재고자산 | 1,050 | 11,096 |
| 11. 매각예정자산 | 507 | |
| (2) 비유동자산 | 1,385,296 | 911,723 |
| 1. 장기대여금 | 1,968 | 2,338 |
| 2. 관계기업투자 | 170,234 | 130,398 |
| 3. 장기금융상품 | 159 | 161 |
| 4. 매도가능금융자산 | 562,262 | 185,255 |
| 5. 만기보유금융자산 | 4,375 | |
| 6. 투자부동산 | 304,560 | 234,441 |
| 7. 유형자산 | 227,461 | 246,015 |
| 8. 무형자산 | 99,122 | 98,469 |
| 9. 기타금융자산 | 5,111 | 3,972 |
| 10. 이연법인세자산 | 10,045 | 10,674 |
| 자산총계 | 9,544,615 | 6,834,664 |

| 계 정 과 목 | 제31(당)기말 | 제30(전)기말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II. 부채 | | |
| (1) 유동부채 | 7,627,245 | 5,096,736 |
| 1. 매입채무및기타채무 | 333,535 | 352,774 |
| 2. 단기매매금융부채 | 173,902 | 54,304 |
| 3.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| 684,342 | 272,227 |
| 4. 예수금 | 4,190,917 | 3,279,098 |
| 5. 파생상품부채 | 9,745 | 4,361 |
| 6. 단기차입금 | 2,112,876 | 1,013,302 |
| 7. 기타유동부채 | 86,012 | 67,557 |
| 8. 당기법인세부채 | 35,914 | 53,112 |
| (2) 비유동부채 | 309,802 | 290,357 |
| 1. 장기차입금 | 100,304 | 100,126 |
| 2. 퇴직급여부채 | 1,409 | 10,865 |
| 3. 이연법인세부채 | 90,347 | 73,602 |
| 4. 요구불상환지분 | 94,232 | 83,463 |
| 5. 기타비유동부채 | 23,511 | 22,300 |
| 부채총계 | 7,937,047 | 5,387,093 |
| III. 자본 | | |
| (1) 자본금 | 22,433 | 22,433 |
| (2) 자본잉여금 | 241,994 | 238,238 |
| (3) 자기주식 및 기타자본 | (21,620) | (17,252) |
| (4) 기타포괄손익누계액 | (11,733) | (2,907) |
| (5) 이익잉여금 | 699,888 | 610,144 |
| 지배기업소유주지분 | 930,963 | 850,656 |
| 비지배지분 | 676,606 | 596,914 |
| 자본총계 | 1,607,569 | 1,447,571 |
| 부채와자본총계 | 9,544,615 | 6,834,664 |

(2) 연결 포괄손익계산서

제 31 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

제 30 기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

(주)다우기술과 그 종속기업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정 과 목 | 제31(당)기 | 제30(전기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I. 매출액 | 1,153,420 | 1,038,502 |
| II. 매출원가 | (673,333) | (567,708) |
| III. 매출총이익 | 480,087 | 470,794 |
| IV. 판매비와관리비 | (226,674) | (210,305) |
| V. 영업이익 | 253,413 | 260,489 |
| 기타수익 | 13,158 | 27,901 |
| 기타비용 | (10,537) | (12,644) |
| 금융수익 | 1,165 | 993 |
| 금융원가 | (5,590) | (5,228) |
| 지분법이익 | 10,543 | 11,975 |
| 지분법손실 | (1,319) | (411) |
| VI.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| 260,833 | 283,075 |
| 계속영업법인세비용 | (69,055) | (80,487) |
| VII. 계속영업이익 | 191,779 | 202,588 |
| VIII. 중단영업이익 | 199 | 31 |
| IX. 당기순이익 | 191,978 | 202,619 |
| X. 기타포괄손익: | | |
|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| | |
|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| 1,176 | (2,697) |
|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| (17,514) | 5,778 |
| 지분법자본변동 | 160 | (785) |
|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| | |
|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| (625) | (1,635) |
| 기타포괄손익의 합계 | (16,803) | 661 |
| XI. 총포괄이익 | 175,175 | 203,280 |
| 당기순이익의 귀속: | | |
| 지배기업소유주지분 | 97,507 | 103,073 |
| 비지배지분 | 94,471 | 99,546 |
| 총포괄이익의 귀속: | | |
| 지배기업소유주지분 | 88,321 | 101,478 |
| 비지배지분 | 86,854 | 101,802 |
| XII. 주당이익 | | |
| 기본 및 희석 주당계속영업이익(원) | 2,249 | 2,382 |
|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(원) | 2,254 | 2,382 |

(3) 연결 자본변동표

제 31 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

제 30 기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

(주)다우기술과 그 종속기업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정 과 목 | 자본금 | 자본잉여금 | 자기주식및 기타자본 |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| 이익잉여금 |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| 비지배지분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2015.01.01 | 22,433 | 244,330 | (17,627) | (2,404) | 513,352 | 760,085 | 489,990 | 1,250,075 |
| 연결총포괄손익: | | | | | | | | |
| 당기순이익 | - | - | - | - | 103,073 | 103,073 | 99,546 | 202,619 |
|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| - | - | - | 2,826 | - | 2,826 | 2,951 | 5,778 |
| 지분법자본변동 | - | - | - | (893) | - | (893) | 108 | (785) |
|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| - | - | - | (2,437) | - | (2,437) | (260) | (2,697) |
|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| - | - | - | - | (1,092) | (1,092) | (543) | (1,635) |
| 소 계 | - | - | - | (503) | 101,982 | 101,478 | 101,802 | 203,280 |
|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: | | | | | | | | |
| 연차배당 | - | - | - | - | (5,625) | (5,625) | - | (5,625) |
| 종속기업 지분변동 등 | - | (6,178) | 399 | - | 435 | (5,344) | 10,615 | 5,271 |
| 종속기업취득 | - | 85 | (23) | - | - | 62 | (291) | (229) |
| 종속기업배당 | - | - | - | - | - | - | (5,201) | (5,201) |
| 소 계 | - | (6,092) | 375 | - | (5,190) | (10,907) | 5,122 | (5,784) |
| 2015.12.31 | 22,433 | 238,238 | (17,252) | (2,907) | 610,144 | 850,656 | 596,914 | 1,447,571 |
| 2016.01.01 | 22,433 | 238,238 | (17,252) | (2,907) | 610,144 | 850,656 | 596,914 | 1,447,571 |
| 연결총포괄손익: | | | | | | | | |
| 당기순이익 | - | - | - | - | 97,507 | 97,507 | 94,471 | 191,978 |
|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| - | - | - | (9,151) | - | (9,151) | (8,363) | (17,514) |
| 지분법자본변동 | - | - | - | 176 | - | 176 | (16) | 160 |
|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| - | - | - | 149 | - | 149 | 1,027 | 1,176 |
|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| - | - | - | - | (360) | (360) | (265) | (625) |
| 소 계 | - | - | - | (8,826) | 97,147 | 88,321 | 86,854 | 175,175 |
|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: | | | | | | | | |
| 연차배당 | - | - | - | - | (6,490) | (6,490) | (7,987) | (14,477) |
| 종속기업 지분변동 등 | - | 3,446 | (2,110) | - | - | 1,336 | 3,078 | 4,413 |
| 연결범위의 변동 | - | (14) | (895) | - | (913) | (1,822) | (1,061) | (2,883) |
| 주식선택권의 부여 | - | - | 153 | - | - | 153 | - | 153 |
| 주식선택권의 행사 | - | 324 | (1,516) | - | - | (1,192) | (1,191) | (2,383) |
| 소 계 | - | 3,756 | (4,369) | - | (7,403) | (8,015) | (7,162) | (15,176) |
| 2016.12.31 | 22,433 | 241,994 | (21,620) | (11,733) | 699,888 | 930,963 | 676,606 | 1,607,569 |

(4) 연결 현금흐름표

제 31 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

제 30 기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

(주)다우기술과 그 종속기업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정 과 목 | 제31(당)기 | 제30(전)기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1. 영업활동 현금흐름 | | |
| 1. 당기순이익 | 191,978 | 202,619 |
| 2. 비현금항목의 조정 | | |
| 퇴직급여 | 6,691 | 6,400 |
| 감가상각비 | 13,286 | 13,602 |
|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| 2,960 | 2,740 |
| 무형자산상각비 | 18,229 | 17,628 |
| 외화환산이익 | (4,176) | (17) |
| 외화환산손실 | 2,378 | 29 |
| 재고자산폐기손실 | - | 1,930 |
| 대손상각비 | 12,264 | 2,598 |
| 기타의대손상각비 | 1,497 | |
| 주식보상비용 | 153 | |
|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손익 | 546 | (10,583) |
|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익 | (46,450) | (1,002) |
|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| (1,182) | - |
| 매각예정자산평가손실 | 493 | - |
| 지분법손실 | 1,319 | 411 |
| 지분법이익 | (10,543) | (11,975) |
| 배당금수익 | (10,907) | 25 |
|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| (813) | (14,719) |
|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| - | 256 |
|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| (6,064) | - |
| 유형자산처분이익 | (34) | (15) |
| 유형자산처분손실 | 60 | 13 |
| 유형자산폐기손실 | 133 | - |
| 무형자산처분이익 | (5) | - |
| 무형자산처분손실 | 1,222 | - |
| 무형자산감액손실 | - | 30 |
| 무형자산손상차손 | 594 | 1,645 |
| 투자부동산처분이익 | (95) | |
| 투자부동산손상차손 | 995 | |
| 잡손실 | 217 | |
| 이자비용 | 61,850 | 5,228 |
| 이자수익 | (195,485) | (993) |
| 법인세비용 | 69,315 | 80,496 |
| 소 계 | (81,552) | 93,725 |

| 계 정 과 목 | 제31(당기) | 제30(전기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3.운전자본의 조정 | | |
| 재고자산 | 8,970 | (3,032) |
| 매출채권 | 18,454 | (7,934) |
| 대출채권 | (312,854) | (65,323) |
| 미수금 | 42,710 | 202,497 |
| 예치금 | (47,781) | 6,816 |
|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| (431,123) | (732,065) |
| 단기매매금융자산 | (894,725) | (754,218) |
| 파생상품자산 | (6,234) | (4,342) |
| 기타유동자산 | (32,086) | 854,582 |
| 기타비유동자산 | (627) | |
| 단기매매금융부채 | 232,089 | 20,772 |
|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| 531,713 | 215,262 |
| 파생상품부채 | 5,384 | 3,955 |
| 매입채무 | (13,177) | 5,776 |
| 미지급금 | (25,733) | (160,039) |
| 기타유동부채 | 394,040 | (4,279) |
| 퇴직금의지급 | (3,776) | (3,800) |
| 기여금납입액 | (15,631) | (2,918) |
| 소 계 | (550,389) | (428,289) |
| 이자의 수취 | 204,394 | 1,035 |
| 이자의 지급 | (57,441) | (4,790) |
| 배당금의 수취 | 11,014 | 5,106 |
| 법인세의 납부 | (74,036) | (30,804) |
| 주식선택권 | (1,409) | - |
|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| (357,441) | (161,398) |
| II. 투자활동현금흐름 | | |
| 사업양도로 인한 현금유입 | 14,139 | - |
| 유형자산의 처분 | 2,287 | 3,215 |
| 유형자산의 취득 | (12,346) | (11,092) |
| 무형자산의 처분 | 2,697 | 710 |
| 무형자산의 취득 | (7,628) | (20,274) |
| 투자부동산의 처분 | 2,287 | 1,567 |
| 투자부동산의 취득 | (9,016) | (5,215) |
|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| 14,729 | - |
|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| (103,610) | (229) |
|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| 45,734 | 37,448 |
|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| (76,241) | (51,031) |
|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| 24,300 | 130,414 |
|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| (85,689) | (96,650) |
| 단기대여금의 대여 | (4,740) | (4,760) |
| 단기대여금의 회수 | 7,775 | 2,715 |
| 장기대여금의 대여 | (173) | (365) |
| 장기대여금의 회수 | 543 | 1,001 |
|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| (506,646) | (104,112) |
|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| 153,800 | 4,311 |

| 계 정 과 목 | 제31(당기) | 제30(전기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| (300) | - |
|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| (138,195) | (54,914) |
|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| 43,151 | 41,007 |
|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| 4,436 | 243 |
|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| (2,250) | (9,492) |
|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| (1,685) | (206) |
|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| 877 | 1,430 |
|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| 3 | - |
|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| - | (5,152) |
|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| (631,764) | (139,431) |
| III. 재무활동현금흐름 | | |
| 단기차입금의 증가 | 9,141,180 | 337,626 |
| 단기차입금의 감소 | (8,615,608) | (146,214) |
| 장기차입금의 증가 | 33 | 110,450 |
| 장기차입금의 감소 | - | (10,851) |
|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| - | (12,800) |
| 환매조건부매도의 증가 | 404,926 | - |
| 전자단기사채의 증감 | 50,000 | - |
| 배당금의 지급 | (14,477) | (7,292) |
| 비지배투자자부채의 순증감 | (13,300) | 49,647 |
| 비지배지분의 순증감 | 73 | - |
| 종속기업소유지분변동 | 4,413 | 5,163 |
|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| 957,239 | 325,729 |
| IV.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(감소) | (31,965) | 24,900 |
| V.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| 2,142 | (9) |
| VI. 해외사업환산차이 | (230) | (4,720) |
| VII.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| 186,201 | 166,029 |
| VIII.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| 156,148 | 186,201 |

(5) 연결 주석 사항

-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 공시한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 참조
- 3월 24일 정기주총 개최장소에 별도 비치된 연결감사보고서 참조

* 상기 재무제표금액은 정기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2. 별도재무제표

(1) 재무상태표

제 31 기 2016 년 12 월 31 일 현재

제 30 기 2015 년 12 월 31 일 현재

(주)다우기술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정 과 목 | 제31(당)기 | 제30(전기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I. 자 산 | | |
| (1) 유동자산 | 143,403 | 220,301 |
| 1. 현금및현금성자산 | 4,645 | 58,870 |
| 2. 매출채권및기타채권 | 33,123 | 65,984 |
| 3. 단기대여금 | 66 | 3,108 |
| 4. 단기금융상품 | 101,239 | 60,350 |
| 5. 기타유동자산 | 2,814 | 20,915 |
| 6. 재고자산 | 1,009 | 11,074 |
| 7. 매각예정자산 | 507 | |
| (2) 비유동자산 | 560,113 | 525,563 |
| 1.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| - | - |
| 2. 장기대여금 | 1,876 | 2,338 |
| 3. 종속기업투자 | 193,454 | 168,024 |
| 4. 관계기업투자 | 45,505 | 28,870 |
| 5. 장기금융상품 | - | 3 |
| 6. 매도가능금융자산 | 36,071 | 47,421 |
| 7. 투자부동산 | 182,922 | 152,607 |
| 8. 유형자산 | 80,026 | 102,702 |
| 9. 무형자산 | 17,875 | 21,314 |
| 10. 기타금융자산 | 1,786 | 1,795 |
| 11. 기타비유동자산 | 598 | 489 |
| 자산총계 | 703,516 | 745,863 |
| II. 부 채 | | |
| (1) 유동부채 | 97,295 | 155,299 |
| 1. 매입채무및기타채무 | 17,110 | 33,876 |
| 2. 단기차입금 | 59,900 | 90,900 |
| 3. 기타유동부채 | 16,583 | 25,640 |
| 4. 당기법인세부채 | 3,702 | 4,882 |
| (2) 비유동부채 | 118,659 | 119,863 |
| 1. 사채 | 99,775 | 99,630 |
| 2. 순확정급여부채 | - | 1,669 |
| 3. 이연법인세부채 | 14,747 | 12,823 |
| 4. 기타비유동부채 | 4,137 | 5,741 |
| 부채총계 | 215,954 | 275,162 |

| 계 정 과 목 | 제31(당)기말 | 제30(전)기말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III. 자 본 | | |
| (1) 자본금 | 22,433 | 22,433 |
| (2) 자본잉여금 | 178,513 | 178,513 |
| (3) 자기주식 | (9,154) | (9,154) |
| (4) 기타포괄손익누계액 | (770) | (66) |
| (5) 이익잉여금 | 296,540 | 278,976 |
| 자본총계 | 487,562 | 470,702 |
| 부채와 자본총계 | 703,516 | 745,863 |

(2) 포괄손익계산서

제 31 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
제 30 기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

(주)다우기술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정 과 목 | 제31(당)기 | 제30(전기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I. 매출액 | 214,672 | 240,112 |
| II. 매출원가 | (175,753) | (202,670) |
| III. 매출총이익 | 38,919 | 37,442 |
| IV. 판매비와 관리비 | (16,912) | (18,309) |
| V. 영업이익 | 22,006 | 19,133 |
| 기타수익 | 22,534 | 24,738 |
| 기타비용 | (10,381) | (12,944) |
| 금융수익 | 1,544 | 1,267 |
| 금융원가 | (4,487) | (3,876) |
| VI.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| 31,216 | 28,318 |
| 계속영업법인세비용 | (7,295) | (9,453) |
| VII. 계속영업이익 | 23,921 | 18,865 |
| VIII. 중단영업이익 | 199 | 31 |
| IX. 당기순이익 | 24,121 | 18,895 |
| X. 기타포괄손익: | (771) | (413) |
|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| | |
|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(법인세효과차감후) | (704) | 170 |
|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| | |
|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(법인세효과차감후) | (66) | (583) |
| XI. 총포괄이익 | 23,350 | 18,482 |
| XII. 주당손익 | | |
| 기본 및 희석 주당계속영업이익 | 553 | 436 |
| 기본 및 희석 주당중단영업이익(손실) | 5 | 1 |

(3)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

제 31 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
 제 30 기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

(주)다우기술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정 과 목 | 제31(당)기말 | | 제30(전)기말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I. 미처분이익잉여금 | | 286,762 | | 269,847 |
|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| 262,708 | | 251,535 | |
| 당기순이익 | 24,121 | | 18,895 | |
|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| (66) | | (583) | |
| II. 이익잉여금처분액 | | 11,898 | | 7,139 |
| 이익준비금 | 1,082 | | 649 | |
| 배당금 | | | | |
| (주당배당금(액면배당률) : | | | | |
| 당 기 : 250원 (50%) | 10,817 | | 6,490 | |
| 전 기 : 150원 (30%) | | | | |
| III.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| | 274,864 | | 262,708 |

상기 이익잉여금의 당기 처분 예정일은 2017년 3월 24일이며,

전기 처분 확정일은 2016년 3월 25일이었습니다.

(4) 자본변동표

제 31 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
 제 30 기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

(주)다우기술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정 과 목 | 자본금 | 자본잉여금 | 자기주식 |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| 이익잉여금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2015.1.1(보고금액) | 22,433 | 178,513 | (9,154) | (236) | 266,288 | 457,844 |
| 당기순이익 | - | - | - | - | 18,895 | 18,895 |
| 기타포괄손익: | | | | | | |
|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| - | - | - | 170 | - | 170 |
|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| - | - | - | - | (583) | (583) |
| 총포괄이익 | - | - | - | 170 | 18,312 | 18,482 |
| 연차배당 | - | - | - | - | (5,625) | (5,625) |
| 2015.12.31(전기말) | 22,433 | 178,513 | (9,154) | (66) | 278,976 | 470,702 |
| 2016.1.1(보고금액) | 22,433 | 178,513 | (9,154) | (66) | 278,976 | 470,702 |
| 당기순이익 | - | - | - | - | 24,121 | 24,121 |
| 기타포괄손익: | | | | | | |
|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| - | - | - | (704) | - | (704) |
|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| - | - | - | - | (66) | (66) |
| 총포괄이익 | - | - | - | (704) | 24,054 | 23,350 |
| 연차배당 | - | - | - | - | (6,490) | (6,490) |
| 2016.12.31(당기말) | 22,433 | 178,513 | (9,154) | (770) | 296,540 | 487,562 |

(5) 현금흐름표

제 31 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

제 30 기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

(주)다우기술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정 과 목 | 제31(당)기 | 제30(전기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1. 영업활동현금흐름 | | |
| 1. 당기순이익 | 24,121 | 18,895 |
| 2. 비현금항목의 조정 | | |
| 퇴직급여 | 2,461 | 2,702 |
| 감가상각비 | 2,174 | 2,507 |
| 투자부동산 상각비 | 1,310 | 1,033 |
| 무형자산상각비 | 2,070 | 1,319 |
| 무형자산손상차손 | 440 | 704 |
| 대손상각비 | 384 | 503 |
| 기타의대손상각비 | 1,197 | 2,060 |
| 외화환산이익 | (15) | (17) |
| 외화환산손실 | 122 | 29 |
|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| (1,070) | (1,170) |
|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| 469 | 64 |
|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| - | (14,366) |
|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| (9,147) | - |
|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| (1,182) | - |
|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| 493 | - |
| 유형자산처분이익 | (11) | (3) |
| 유형자산처분손실 | 3 | - |
| 유형자산폐기손실 | 85 | 2 |
| 투자부동산손상차손 | 534 | - |
| 무형자산처분이익 | (5) | - |
| 무형자산처분손실 | 15 | - |
| 이자수익 | (1,544) | (1,267) |
| 이자비용 | 4,487 | 3,876 |
| 잡손실 | 217 | - |
| 배당금수익 | (8,614) | (5,307) |
| 법인세비용 | 7,555 | 9,462 |
| 소 계 | 2,428 | 2,129 |
| 3. 운전자본의 조정 | | |
| 재고자산 | 10,065 | (1,099) |
| 매출채권 | 17,128 | (4,974) |
| 미수금 | (8,091) | (4,133) |
| 기타유동자산 | 332 | 1,334 |
| 사외적립자산 | (5,800) | (2,300) |
| 퇴직금의 지급 | (48) | (1,032) |
| 매입채무 | (13,241) | 5,659 |
| 미지급금 | 1,143 | 5,970 |
| 기타유동부채 | 1,418 | 1,656 |
| 소 계 | 2,904 | 1,081 |

| 계 정 과 목 | 제31(당기) | 제30(전기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이자의 수취 | 1,225 | 1,162 |
| 배당금의 수취 | 8,109 | 5,307 |
| 법인세의 납부 | (7,735) | (6,092) |
| 이자의 지급 | (6,794) | (3,932) |
|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| 24,258 | 18,552 |
| II. 투자활동현금흐름 | | |
|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(유출) | 248 | (4,671) |
| 사업양도로 인한 현금유입 | 14,139 | - |
| 유형자산의 처분 | 61 | 75 |
| 유형자산의 취득 | (5,763) | (1,843) |
| 무형자산의 처분 | 187 | - |
| 무형자산의 취득 | (2,293) | (1,558) |
| 투자부동산의 처분 | - | 252 |
| 투자부동산의 취득 | (5,687) | (5,745) |
|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| 10,798 | - |
|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| - | (1,960) |
|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| - | 15,931 |
|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| (9,366) | - |
|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| 9,707 | 5,854 |
|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| (6,434) | (44,060) |
|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| 60,350 | 120,323 |
|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| (101,239) | (126,150) |
| 단기대여금의 회수 | 7,690 | 8,241 |
| 단기대여금의 대여 | (4,648) | (10,504) |
|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| 3 | - |
| 장기대여금의 회수 | 543 | 1,110 |
| 장기대여금의 대여 | (143) | (474) |
|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| 990 | 1,936 |
|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| (1,680) | (656) |
|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| 1,598 | 640 |
|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| (2,527) | (371) |
| 분할로 인한 현금의 감소 | (7,500) | - |
|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| (40,965) | (43,630) |
| III. 재무활동현금흐름 | | |
| 배당금의 지급 | (6,490) | (5,625) |
| 단기차입금의 증가 | 13,000 | 101,000 |
| 단기차입금의 감소 | (44,000) | (138,000) |
|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| - | (12,800) |
| 사채 발행 | - | 99,573 |
|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| - | (8,110) |
|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| (37,490) | 36,038 |
| IV.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(감소) | (54,197) | 10,959 |
| V.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| (29) | (9) |
| VI.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| 58,870 | 47,920 |
| VII.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| 4,645 | 58,870 |

(6) 주석 사항

-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 공시한 당사의 감사보고서 참조
- 3월 24일 정기주총 개최장소에 별도 비치된 감사보고서 참조

* 상기 재무제표금액은 정기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◆ 제안내용 ◆

상법 제 4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.

[정관변경안]

| 현 행 | 개 정(안) | 비 고 |
|---|---|--|
| 제 2 조(목적) 1) ~ 48) 종전과 동일 <u>49) 애니메이션 제작 및 판매업</u> <u>50) 영화상영 및 영화관운영업</u> <u>51) 영화관에 부속하는 각종 위락시설, 음식점, 매점 등의 영업</u> <u>52) 문구(펜시)제조 및 출판, 인쇄업</u> <u>53) 캐릭터 개발, 판매 및 중개업</u> <u>54) 음반제작 및 유통업</u> <u>55) 만화 및 소설 출판업</u> <u>56) 구매대행 및 공동구매업</u> <u>57)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(이류, 생활용품, 전자제품, 공산품)</u> <u>58) 창고 및 물류업</u> <u>59) 생활용품, 미용기기, 화장품 도소매</u> <u>60) 일반식품 도소매</u> <u>61) 상품종합 도매업, 중개업</u> <u>62) 육류 도매업</u> <u>63) 기타상품 중개업</u> <u>64) 기타통신 판매업</u> <u>65) 멤버십 포인트 관리 및 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</u> <u>66) 멤버십 포인트 가맹점, 제휴사 유치업</u> <u>67) 쿠폰 및 물품 등의 유통, 판매, 판매대행업</u> <u>68)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사업</u> <u>69) 마케팅대행업</u> <u>70) 고객센터대행업</u> <u>71)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 업</u> <u>72) 태양광발전 전력생산 판매업</u> <u>73)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</u> <신 설> | 제 2 조(목적) 1) ~ 48) <삭 제> <u>49) <좌 동></u> <u>50) <좌 동></u> <u>51) <좌 동></u> <u>52) <좌 동></u> <u>53) <좌 동></u> <삭 제> <u>54) <좌 동></u> <u>55) <좌 동></u> <u>56) <좌 동></u> <u>57) <좌 동></u> <u>58) <좌 동></u> <u>59) <좌 동></u> <u>60) <좌 동></u> <u>61) <좌 동></u> <u>62) <좌 동></u> <u>63) <좌 동></u> <u>64) <좌 동></u> <u>65) <좌 동></u> <u>66) <좌 동></u> <u>67) <좌 동></u> <u>68) <좌 동></u> <u>69) <좌 동></u> <u>70) <좌 동></u> <u>71) <좌 동></u> <u>72)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</u> <u>73)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</u> <u>74)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</u> <u>75) 위성 및 기타 방송업</u> <u>76)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</u> | 사업영역 확대 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및 삭제에 따른 항목번호 변경 |

| 현행 | 개정안 | 비고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74)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</p> | <p>77)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78)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</p> | |
| <p>제 10조(주식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② (생략)</p> <p>7.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. (생략)</p> <p>9. 재무구조 개선 등 긴급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(이하 생략)</p> | <p>제 10조(주식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② <현행과 동일></p> <p>7.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----- ----- -----</p> <p>8. <현행과 동일></p> <p>9. ----- ----- -----제 2 조 제 4 호----- <현행과 동일></p> | <p>근로복지기본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 |
| <p>제 10 조의 3(주식매수선택권) ① 당 회사는 임직원(상법 시행령 제 9 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.)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의... (이하 생략)</p> <p>② 제 1 항 단서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당 회사의 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,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, 경영,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 년 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 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. (신설)</p> <p>⑧ (생략)</p> <p>1.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(이하 생략)</p> | <p>제 10 조의 3(주식매수선택권) ① ----- (----- ----- 제 30 조----- ----- ----- (이하 생략)</p> <p>② ----- ----- 부여 후 처음으로 ----- ----- ----- 기여하거나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~ ⑥ <현행과 동일></p> <p>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⑧ <현행과 동일></p> <p>1. ----- 본인의 의사에 따라 ----- <현행과 동일></p> | <p>상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</p> |
| <p>제 10 조의 5(우리사주매수선택권)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</p> | <p>제 10 조의 5(우리사주매수선택권) ① ----- ----- -----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. ② ~ ④ <현행과 동일></p> <p>⑤ ----- 근로복지기본법 -</p> | <p>근로복지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</p> |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고 |
|--|---|---|
| <p>법 시행규칙 제 11 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<u>우리사주매수선택권</u>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⑦ <u>우리사주매수선택권</u>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| <p>----- <u>제 14 조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⑥ ----- <u>어느 하나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<현행과 동일></p> <p>⑦ <u>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⑧ <좌 동></p> | |
| <p>제 13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②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<u>주주</u>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.</p> | <p>제 13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</u> -----</p> <p>-----</p> | <p>의미 명확화</p> |
| <p><신설></p> | <p>제 14 조(사채의 발행) ①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</p> | <p>사채발행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</p> |
| <p>제 14 조(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,000,000,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</p> <p>② 제 1항 <u>제 2호</u>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<u>익일부터</u>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<u>제 10 조의 5</u>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| <p>제 14 조의 2(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 <좌 동></p> <p>② ----- <u>제 4 호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~ ④ <현행과 동일></p> <p>⑤ ----- <u>후</u> -----</p> <p>----- <u>공모의 경우 1월, 사모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⑥ ----- <u>제 10 조의 4</u> -----</p> | <p>참조 조문번호 오류 정정 및 발행공시규정 5-21 조 준용</p> |
| <p>제 15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 1항 <u>제 2호</u>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<u>신주</u>를 배정</p> | <p>제 15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</p> <p>① <현행과 동일></p> <p>② ----- <u>제 4 호의</u> ----- <u>사채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사채를</u> -----</p> | <p>참조 조문번호 오류 정정 및 문구 수정</p> |

| 현 행 | 개 정(안) | 비 고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신주인수의 청약</u>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<u>신주</u>를 배정하는 방식</p> <p>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<u>신주인수의 청약</u>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<u>주식</u>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<u>신주</u>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</p> <p>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<u>신주인수</u>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</p> <p>③ <u>신주인수</u>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 그러나 시가하락 등에 의한 <u>신주인수권</u>의 행사금액의 조정은 제 1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⑥ <u>신주인수권</u>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| <p>-----.</p> <p>1. <u>사채인수</u>의 ----- ----- <u>사채</u> -----</p> <p>2. ----- <u>사채인수</u>의 ----- ----- <u>사채</u>가 - ----- <u>사채</u>를 -----</p> <p>3. ----- ----- <u>사채인수</u> -----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/p> <p>- 제 14 조의 2 제 4 항의 -----</p> <p>④ ~ 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⑥ ----- ----- <u>제 10 조의 4 의</u> -----</p> <p>---</p> | |
| <p>제 18 조 (소집권자)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의하여 대표이사 <u>사장이</u> 소집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 <u>사장이</u> 유고 시에는 제 34 조의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| <p>제 18 조 (소집권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가 -----.</p> <p>② -----가 ----- -----.</p> | '대표이사 사장'을 '대표이사'로 정정 |
| <p>제 21 조 (의 장)</p> <p>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<u>대표이사(사장)</u> 으로 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 <u>사장이</u> 유고 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| <p>제 21 조 (의 장)</p> <p>① -----<u>대표이사</u>로-----.</p> <p>② -----가 ----- -----.</p> | '대표이사 사장'을 '대표이사'로 정정 |
| <p>제 27 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</p> <p>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 27 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</p> <p>----- <u>다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 | 문구 수정 |
| <p>제 29 조 (이사 및 감사의 수)</p> <p>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. (신설)</p> | <p>제 29 조 (이사 및 감사의 수)</p> <p>① <현행과 동일></p> <p>② ----- ----- 단, 상법 제 542 조의 10 규정에 따라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1인 이상을 상근으로 한다.</p> |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라 단서조항 신설 |
| <p>제 30 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</p> <p>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</p> <p>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,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본인 또는 그 특</p> | <p>제 30 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</p> <p>① <좌 등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</p> | 의미 명확화 |

| 현행 | 개정안 | 비고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수관계인에 의결권을 위임한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</p> <p>③ <현행과 동일></p> | |
| <p>제 34 조 (이사의 직무) ① 대표이사 <u>사장은</u>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<u>사장을</u>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<u>사장의</u>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| <p>제 34 조 (이사의 직무) ① ----- 는 ----- .</p> <p>② ----- 대표이사를 ----- 의 ----- .</p> | <p>‘사장’문구 삭제 및 ‘대표이사’로 변경</p> |
| <p>제 37 조의 2 (이사회 내 위원회)</p> <p>이사회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감사, (사외이사) 후보추천, 보수, 경영, 운영, 재무, 기술, 평가위원회 등 각종의 위원회를 이사회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.</p> | <p>제 37 조의 2 (이사회 내 위원회)</p> <p>-----, <u>사외이사</u> ----- .</p> | <p>괄호 삭제</p> |
| <p>제 43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</p> <p>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<u>서류와</u>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<u>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</u>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<u>서류에</u>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| <p>제 43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</p> <p>① ----- , ----- <u>서류와</u> 영업보고서를 ----- .</p> <p>1. <좌 동> 2. <좌 동> 3. <좌 동></p> <p>② <현행과 동일></p> <p>③ -----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----- .</p> <p>④ ----- 각 서류에 ----- <u>얻은</u> ----- .</p> <p>⑤ <현행과 동일></p> | <p>문구 수정</p> |
| <p>제 44 조 (이익금의 처분)</p> <p>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 | <p>제 44 조 (이익금의 처분)</p> <p>-----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----- .</p> <p><현행과 동일></p> | <p>문구 수정</p> |
| <p>제 45 조의 2 (분기배당)</p> <p>① ~ ④ (생략) <신설></p> | <p>제 45 조의 2 (분기배당)</p> <p>① ~ ④ <현행과 동일></p> <p>⑤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</p> <p>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.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</p> | <p>분기배당 재원의 제한규정 신설</p> |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|
| | <u>4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</u> <u>5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</u> <u>6.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</u> <u>7.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</u> | |
| 〈신설〉 | <u>부칙</u> <u>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 부터 시행한다.</u> | 시행일 변경 |

제 3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◆ 제안내용 ◆

상법 제 382 조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 30 조, 제 31 조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.

- (1) 이사 총수 : 3 명(사외이사 1 명 포함)
- (2)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 : 윤문석(사외이사)
- (3) 신규 선임 이사 (1 명) : **김용대(사외이사)**
- (4) 이사 후보자 (1 명)

| 후보자 성 명 | 생년월일 | 추천인 | 주요약력 | 회사와의 거래내역 | 최대주주 와의관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김 용 대 (사외이사) | 68.09.03 | 이사회 |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석사 Ohio State University 통계학 박사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(현) | 없음 | 없음 | 신규선임 |

제 4 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
◆ 제안내용 ◆

상법 제 409 조의 규정 및 당사 정관 30 조, 31 조, 32 조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.

- (1) 감사 총수 : 1 명
- (2) 감사 후보자 (1 명)

| 후보자 성 명 | 생년월일 | 추천인 | 주요약력 | 회사와의 거래내역 | 최대주주 와의관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최 봉 식 (상근감사) | 54.03.02 | 이사회 | 벨기에 루뱅대(Leuven) MBA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사장 현대그룹전략기획본부 부회장(현) | 없음 | 없음 | 신규선임 |

제 5 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
◆ 제안내용 ◆

상법 제 388 조, 제 542 조의 12 및 당사 정관 제 40 조의 규정에 의거 2017 년의 이사 보수한도를 다음과 같이 승인 받고자 합니다.

(1) 전기 이사보수한도액 : 1,800,000,000 원

전기 이사보수집행액 : 344,863,645 원

(2) 당기 이사보수한도액 : 1,800,000,000 원

제 6 호 의안 :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
◆ 제안내용 ◆

상법 제 415 조, 제 542 조의 12 및 당사 정관 제 40 조의 규정에 의거 2017 년의 감사 보수한도를 다음과 같이 승인 받고자 합니다.

(1) 전기 감사보수한도액 : 100,000,000 원

전기 감사보수집행액 : 24,000,000 원

(2) 당기 감사보수한도액 : 100,000,000 원